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48회 임시회

# 검 토 보 고 서

2021. 4. 16. (금)

검 토 안 건	발 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의 원



**복지도시위원회**

(전문위원 조광현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회부경위

- 제안자 : 김영미 의원 외 5인
- 제안일 : 2021. 4. 12.
- 회부일 : 2021. 4. 12. (의안번호 : 21-41)

### 2. 제안이유

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, 신규 채용 위축 등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청년 대상 활동비 지급 근거 조항 신설(안 제12조 제3항 및 제4항)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가. 「청년기본법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  - 나.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입법예고 : 제출의견 없음 (기간 : '21. 4. 9 ~ '21. 4. 14)
- 규제사항 유무 : 규제사항 없음
- 부패영향 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

## 5. 검토의견

- 「청년기본법」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,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 
또한,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3조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- 2020년 말 기준 통계청 발표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국 실업자는 110만 8천명으로 전년도 대비 4.2% 증가하였고, 이 중 서울은 24만 1천명으로 전국의 21.8%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3.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 
실업률을 보면 전국 4.0%, 서울 4.6%로 서울지역의 실업률이 높았으며, 특히 청년실업률을 보면 전국 8.2%로 전년도 대비 1.1% 증가하였고, 서울은 9.1%로 전년도 대비 2.5% 증가하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(별첨 1)
-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12조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 
주요내용은
  - 안 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
  - 안 제4항에서는 예산지원이 가능한 청년활동, 지급대상, 절차 및 방법과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.

## ○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신규채용 위축 등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.

## ※ 참고 자료

1. 2020년 서울지역 고용동향(서울고용노동청)
2. 관계법령

[자료 1]

2020년

(자료: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)

서울 지역  
고용 동향

서울고용노동청  
노동시장분석팀(2004-7951)

전 국

서 울

(전년대비)

전체 인구 (주민등록)	5,182만 9천명 · 2만 1천명 감소(0.0%↓)	966만 8천명(전국의 18.7%) · 6만 1천명 감소(0.6%↓)
15세이상 인구	4,478만 5천명 · 28만 1천명 증가(0.6%↑)	851만 6천명(전국의 19.0%) · 3만 8천명 증가(0.4%↑)
경제활동 인구	2,801만 2천명 · 17만 4천명 감소(0.6%↓) -경제활동참가율 62.5%(0.8%p↓) *청년경참여율 45.7%(1.8%p↓)	529만 3천명(전국의 18.9%) · 2만 7천명 감소(0.5%↓) -경제활동참가율 62.1%(0.6%p↓) *청년경참여율 51.9%(0.8%p↑)
취업자	2,690만 4천명 · 21만 8천명 감소(0.8%↓) -고용률 60.1%(0.8%p↓) *15~64세 고용률 65.9%(0.9%p↓) *청년고용률 42.0%(2.1%p↓)	505만 1천명(전국의 18.8%) · 3만 5천명 감소(0.7%↓) -고용률 59.3%(0.7%p↓) *15~64세 고용률 65.9%(0.4%p↓) *청년고용률 47.1%(0.6%p↓)
실업자	110만 8천명 · 4만 5천명 증가(4.2%↑) -실업률 4.0%(0.2%p↑) *청년실업률 8.2%(1.1%p↑)	24만 1천명(전국의 21.8%) · 8천명 증가(3.5%↑) -실업률 4.6%(0.2%p↑) *청년실업률 9.1%(2.5%p↑)
비경제 활동인구	1,677만 3천명 · 45만 5천명 증가(2.8%↑)	322만 3천명(전국의 19.2%) · 6만 5천명 증가(2.0%↑)

\*청년층 자료는 '20.4/4분기 기준임

□ 경제활동참가율(%)

인천(64.2) > 대전(63.4) > 경기(62.8) > 서울(62.1) > 광주(61.0) > 울산(60.7) > 대구(58.9) > 부산(58.1)

□ 15~64세 고용률(%)

인천(66.9) > 대전(66.2) > 서울=경기(65.9) > 광주(63.8) > 대구(63.0) > 부산=울산(62.9)

□ 실업률(%)

서울=인천(4.6) > 대전(4.4) > 부산=울산(4.2) > 경기(4.0) > 대구=광주(3.9)

## [자료 2] 관계법령

### 청년기본법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,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###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( 약칭: 청년고용법 )

**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,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, 직업 지도,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기업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(이하 “기업등”이라 한다)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(이하 “대학등”이라 한다)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,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